#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498

발의연월일: 2022. 1. 21.

발 의 자 : 임호선 · 신영대 · 오영환

이학영 · 조승래 · 박상혁

박재호 • 고영인 • 김윤덕

김상희 · 이장섭 · 신정훈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18헌바524 결정을 통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구 성폭력처벌법제21조의3제4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한다는 결정을 내렸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변호인의 반대신문 도중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어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하며, 증거보전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피해를 완전히 막기 어렵고, 피해가 중하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일수록 증거보전절차를 초 기에 실시하기 어렵다는 등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미비하 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헌재가 설시한 반대신문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서도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으로 하

여금 19세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진술보조인을 증인신문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는 신문의 방식을 법원과 검사, 변호인, 진술조력인이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 37조).

#### 법률 제 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13세 미만 아동이거나"를 "19세 미만이거나"로,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를 "원활한 증인 신문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원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검사, 변호인 및 진술조력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1. 증인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신문의 방식
- 2. 증인이 이해할 수 있는 증인신문의 방식
- 3. 증인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 법원에 알리는 방식
- 4. 그 밖에 진술조력인에 의한 증인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의 중 개·보조에 필요한 사항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참여) ①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	<u>1</u> 9세 미만이거나 <u>-</u> -
<u>나</u>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	
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u>원활한 증</u>	원활한
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증인 신문과 피해자 보호를 위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u>ॅंगे व</u>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	
<u>으로</u>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u>하여야 한다</u> .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	
거나 보조하게 <u>할 수 있다</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법원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검사, 변호인 및 진
	술조력인과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증인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
	<u>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을 침해</u>
	하지 않는 신문의 방식
	2. 증인이 이해할 수 있는 증인
	<u>신문의 방식</u>
	3. 증인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 법원에 알
	리는 방식
	4. 그 밖에 진술조력인에 의한
	증인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
	현의 중개·보조에 필요한 사
	<u>ঠ</u> ্ব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